

“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등록번호	교통정책과-10697
등록일자	2015.7.1.
결재일자	2015.7.1.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주무관	교통정책팀장	교통정책과장	안전교통국장		
조윤희	황관웅	장원석	전결 07/01 조흥기		
협조자					

2015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계획

【목 적】

- '15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의 건실화를 위해 부과대상 시설물에 대한 현장조사, 30일 이상 연속 시설물 미사용의 신고-접수, 기업체 교통수요 관리 이행실태 점검 등의 관련절차를 철저히 수행하여 강남구의 교통여건을 개선하고 세외수입 증대에 최선을 다하고 함

【부과개요】

- 부과대상 :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주거용 제외)
집합건물의 경우, 시설물 내 소유면적이 160㎡ 이상인 시설물
- 부과건수 : 약 4,918개소 / 8,190건(예상)
- 부과기간 : 2014. 8. 1 ~ 2015. 7. 31 (납부기한 : 2015. 10. 16 ~ 10. 31)
- 납부의무자 : 부과기준일 현재 시설물 소유자 (부과기준일 : 2015. 7. 31)
- 부담금 산정기준 : 바닥면적(㎡) × 단위부담금(원/㎡) × 교통유발계수

【추진일정】

- 부과대상시설물 실태조사 결과 및 공부상 변동자료 전산입력 (2015.7.31)
- 미사용신고안내문 발송·접수 및 부담금 경감조정 (2015.8.1 ~ 2015.9.30)
- 고지서 반송자 및 체납자 발송이력 조회 정비 (2015.9.30)
- 부담금 부과 사전안내문 발송 (2015.9.25)
-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개최 (2015.9.30)
- 고지서 등기우편 발송 및 반송자에 대한 일반우편 재발송(2015.10.20)

강 남 구
(교통 정책 과)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 서울특별시 교통정책과-12393(2015.06.07)호 “2015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계획 ”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추진경위 :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 및 공부상 변동자료를 바탕으로 과세자료의 정확성을 강화하여 누락세원을 발굴하고, 부과 안내문 발송과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발송이력조회 등을 통하여 부담금 부과·징수에 최선을 다하고자 함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근거 : 2015. 행안부 예산편성 지침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해당사항 없음
분야별 검토사항 (계속 : ○) (신규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① 관련부서 협조 ----- (○)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⑤ 시장조사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
타 기관 사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타 구 실태파악 결과 -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 공동사항
전문가 자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사항 없음

2015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계획

‘15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의 건실화를 위해 부과대상 시설물에 대한 현장조사, 30일 이상 연속 시설물 미사용의 신고-접수,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이행실태 점검 등의 관련절차를 철저히 수행하여 강남구의 교통여건을 개선하고 세외수입 증대에 최선을 다하고 함

I 업무 개요

□ 교통유발부담금 도입목적

교통혼잡 완화대책의 일환으로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여 도시교통개선을 위한 자발적 교통수요관리를 유도

□ 추진근거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 내지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29조
-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교통정책과-12393(2015.06.17)호 “2015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계획 ”

□ 개요

■ 부과개요

- 부과대상 :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4,918개소예상)
- 부과기간 : 2014. 8. 1 ~ 2015. 7. 31 (부과기준일 : 2015. 7. 31)
- 납부의무자 : 부과기준일 현재 시설물 소유자
- 납부기한 : 2015. 10. 16 ~ 10. 31 (고지서발송 : 2015. 10. 8)
- 부담금 산정기준 : 각층 바닥면적의 합(㎡) × 단위부담금(원/㎡) × 교통유발계수

■ 최근3년 부과·징수 현황

[단위:건/백만원, 2015.6.20.기준]

구분	부과		징수		계납		징수율 (금액대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소계	31,511	48,198	30,926	47,736	585	462	99.04
2014	7,968	15,818	7,699	15,580	269	238	98.49
2013	11,816	16,167	11,635	16,035	181	132	99.18
2012	11,727	16,213	11,592	16,121	135	92	99.43

■ 2015년 부과징수 목표 : 납기내 징수율 96% (서울시평가기준 1등급 : 96%)

II '15년 주요 업무 내용

□ 배경

- 단위부담금 상향조정과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경감비율의 조정을 통해 기업체의 자발적 교통수요관리를 유도함으로써 대도시 교통혼잡문제 해결의 실효성 확보

□ 주요 변경내용

① 교통유발부담금 단위부담금 상향

- 현재 1㎡당 700원인 단위부담금을 '20년까지 최대 2,000원으로 단계적 인상

〈기 준〉		〈개 정〉							
부과기준	'13년	부과기준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3천㎡ 미만 또는 3천㎡이상이나 부설주차장 10면 미만	350원	3천㎡ 이하	700원	700원	700원	700원	700원	700원	700원
		3천㎡ 초과 ~3만㎡ 이하	700원	800원	900원	1,000원	1,100원	1,200원	1,400원
3천㎡ 이상이고 부설주차장 10면 이상	700원	3만㎡ 초과	800원	1,000원	1,200원	1,400원	1,600원	1,800원	2,000원

※ 단, 3천㎡ 미만인 시설은 단위부담금을 50/100으로 함

※ '14년도 적용부담금은 '14년 8.1~'15. 7.31까지 부과분으로 실제 부과 징수는 '15년에 이루어져 '15년 결산금액으로 표시됨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규칙 개정(2014.8.5.)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계 관한 조례 개정(2014.5.14.)

② 부담금 산정방식을 면적별로 차등 적용

- 면적을 3천㎡이하, 3천㎡이상~3만㎡미만, 3만㎡초과 3등급으로 나누어 단위부담금 차등 적용

적용 예시	기 존	개 정
면적 4만㎡ 적용시 (‘20년 부담금 기준)	4만㎡×700원×교통유발계수	{(3천㎡×700원)+(2만7천㎡×1,400원)+(1만㎡×2,000원)}×교통유발계수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규칙 개정(2014.8.5.)

※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계 관한 조례 개정(2014.5.14.)

③ 기업체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의 경감비율을 실효성 있게 조정

연번	기존 프로그램		경감률	연번	개정 프로그램		경감률
1	승용차 부제	요일제(5부제)	20%	1	승용차 부제	요일제(5부제)	20%
2		2부제	30%	2		2부제	30%
3	주차 수요 관리	주차장 유료화	20%	3	주차 수요 관리	주차장 유료화	30%
4		주차장 축소	30%	4		주차장 축소	20%
5		주차유도시스템	20%	5		주차유도시스템	10%
6	자전거 이용		20%	6	자전거 이용		20%
7	유연근무제		20%	7	유연근무제		20%
8	통근버스 운영		25%	8	통근버스 운영		25%
9	셔틀버스 운영		15%	9	셔틀버스 운영		15%
10	업무택시제		30%	10	업무택시제		20%
11	기타		20%	11	기타		10%

※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계 관한 조례 개정(2014.5.14.)

※ 주차장 유료화 기준 강화: “공영노외 주차장 요금의 70% 이상시” 감면 → “공영노외 주차장 요금 이상시” 감면

III

‘15년 부과-징수 중점 사항

□ 정기분 부과징수 철저

■ 누락세원 발굴 : 1,000㎡ 이상 시설물 전수조사 실시

- 전체 시설물 및 관내 신축·멸실 시설물 현장조사
- 부담금 면제대상 시설물의 타용도 사용, 공실 여부 현장 조사
- 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등 공부상 변동사항 대사작업
- 최종 납부대상자·납부액 확정 후 납부기일 5일전까지 소유주의 주소지

로 납부고지서 발부 (반송된 경우 일반우편 재발송 및 공시송달 처리)

■ 부담금 경감(감면)대상 안내 철저

- 30일 이상 미사용 시설물에 대한 감면제도 안내문 및 신고서 우편발송
- 시설물 현장조사 시, 관리자에게 미사용 신고제도 안내
-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참여시 부담금 감면율, 참여방법 등 홍보
- 과밀부담금 납부시설 여부, 감면요건 확인 등 시설물 조사

□ 부담금 부과 사전안내 등 제도안내를 통한 민원해소 및 징수율 증대

- 구보·우리부서 홈페이지 및 전광판 등을 활용한 부담금 부과 사전안내 및 기업체교통수요관리 이행실태현장점검 시 제도 홍보등을 통하여 민원 편의 제공
- 시설물 현장조사 시 제도 및 감면신청 절차에 대한 안내문 교부
- 부담금 사전고지 안내문 및 미납자에 대한 납부안내문 발송
- 고지서 이면을 활용한 제도 운영 사항 공지 (이의신청 기한 등 명시)

□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운영 내실화

-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이행실태 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단순반복적인(형식적인) 행사추진에 따른 감면 최소화
- 조례에 따른 부담금 면제대상인 공동주택 단지안의 복리시설 결정시 당해 시설의 교통수요유발여부를 실확인 후, 심의를 거쳐 부담금 경감 결정
- ※ 기타 프로그램에 대한 감면여부 판단 시, 교통량 감축효과 등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확인 철저
- 단순반복적인(형식적인) 행사 추진에 따른 감면은 최소화

□ '15년 부과시부터 적용되는 법령 개정사항 숙지 철저

- 단위부담금 상향조정과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경감비율 조정에 대한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별도 교육 실시 예정

IV 세부 추진 일정

□ 목표 : 납기내 징수율 96% 달성 (서울시 평가기준 1등급 : 96% 이상)

□ 추진일정

- (1) 부과대상시설물 및 관내 신축시설물 현장조사 (2015. 5월)
- (2) 부과대상시설물 변동사항 대사항업 및 전산입력 (2015. 7. 31 限)
 -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확인(소유권이전, 용도변경, 신축, 멸실, 대수선 등)
- (3) 2015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미사용 신고 안내문 발송 (2015. 8. 5)
 - 안내문발송 → 미사용 신고 접수 → 부담금 경감 조정 완료 (2015.9.30)
- (4) 부과대상자 송달 주소 조회 및 정비 (2015. 9. 30 限)
- (5) 고지서 발송 전 사전부과 안내문 발송 (2015. 9. 20)
- (6)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개최 (2015. 9월 초 예정)
- (7) 2015년도 정기고지서 등기우편 발송 (2015. 10. 7)
- (8) 고지서 발송 후 미납자에 대한 납부안내문 발송 (2015.10.20)
- (9) 고지서 반송자에 대한 일반우편 재발송 및 주소이력 조회 (2015.10.21)

V

‘15년 세무 업무 내용

□ 부과·징수 대상

■ 시설물

-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m² 이상인 시설물
- 불법사용, 면제시설(주차장 및 주거용 시설물)의 면적도 포함
단, 부담금 부과 시 면제시설물의 면적은 제외하고 교통유발부담금 산출

■ 납부의무자

- 2015. 7. 31 현재 부과대상 시설물 소유자
- 부과기간 중 부과대상시설물이 멸실된 경우, 부과기간 중 최종소유자
- 부과대상시설물을 공동 또는 분할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는 각각 그 소유지분에 따라 부담금 부과
 - ※ 소유면적이 160m² 미만이거나 시가표준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는 비부과
- 매매, 증여, 경매 등을 사유로 부과기간중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시설

- 물을 취득한 자의 신청에 의하여 소유기간별로 일할 계산하여 부과
- ※ 부담금 일할계산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양수자가 납무의무 승계

□ 부담금 부과 기준

■ 단위부담금(1㎡당 부과금)

- 각 층 바닥면적의 합이 1,000㎡ 이상 3,000㎡미만 : 350원
- 각 층 바닥면적의 합이 3,000㎡ 이상일 경우, 시설물의 면적구분에 따른 단위부담금을 적용

■ 부담금 산출방법

- 단일용도 : '각층 바닥면적의 합 × 교통유발계수 × 단위부담금'
- 복합용도 : '용도별 바닥면적의 합 × 용도별 교통유발계수 × 단위부담금'의 총합

□ 교통유발계수

- 용도별 유발계수 : 공장 0.47 ~ 백화점, 대규모쇼핑센터 10.92
- 시설물의 실제 사용용도가 건축물 관리대상상 용도와 다른 경우에는 실제 사용용도의 유발계수 적용
- 부속시설물(공용계단, 기계실 등)은 주된 용도의 교통유발계수 적용

□ 분할납부

- 대 상 : 교통유발부담금이 500만원 이상인 시설물
 - 납부금액이 1천만원 이하 : 500만원 + 초과 금액
 - 납부금액이 1천만원 초과 : 금액의 50/100이상 + 50/100이하
- 신 청 : 납기시작일 이후 5일 이내 신청서 제출
 - 납부기한 내 고지서와 분할납부기한 내 고지서를 구분하여 고지서 수정발부
 - ※ 분할 납부기한 : 납부기간 만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 교통유발부담금 면제 및 경감

- 면제대상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 동법시행령 17조, 시조례 제3조
 - 주한 외국 정부기관, 주한 국제기구 및 외국 원조단체 소유의 시설물, 주거용 건물 (복합용도 시설물의 주거용 부분 포함)

- 주차장 및 차고, 정당 소유 시설물, 종교시설, 교육용 시설물, 사회복지시설, 대한적십자사 소유 시설물, 박물관 및 미술관, 도서관, 국가 등이 설치한 문화시설, 보훈병원, 공장, 동·식물·군사 관련 시설, 물류 터미널 및 창고, 도시철도시설, 기타 관계 법률 및 조례에 면제하도록 규정된 시설물 등
- 송배전용 변전소,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쓰레기처리시설, 배수펌프시설, 상수도 정수시설 및 물재생시설
- 공동주택단지 안의 복리시설 (단, 부담금 부과대상 면적의 합계가 3,000㎡ 미만이며, 너비 20m 이하의 도로에 인접한 시설)
- 주거복합건물(공동주택과 주거외의 용도가 복합된 시설물) 중 부담금 부과대상 면적이 500㎡ 미만인 시설물 (단, 너비 20m 이하의 도로에 인접한 시설)

※ 해당 시설물의 본래의 목적 외에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예: 교회내에서 음식점이나 커피숍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해당 면적만큼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실제 사용용도에 따라 부과

■ 경감대상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8조, 동법시행령 24조, 시조례 제6조

- 시설물 소유자가 휴업 등의 사유로 30일 이상 사용하지 않은 시설물
 - ※ 시설물 미사용 신고를 하지 아니한 시설물에 대해 구청장 직권이나 경감 심의위원회 결정으로 부담금을 감면해 줄 수 없음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인 부과대상 시설물 (50%경감)
-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참여에 따른 감면
 - ※ 전년도에 교통량감축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자는 경감신청서를 2015.8.10까지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
 - ※ 구청장은 경감신청서의 내용과 정기(수시) 점검한 이행점검 결과 확인서를 근거로 경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담금 경감률을 결정하고, 결정통보서를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통보

□ 교통유발부담금 정확한 전산 입력 철저

■ 서울행정시스템(<http:10.46.147.114>) 교통유발부담금 관련 자료 관리

- 시설물정보, 부과·수납·채납관리, 압류·결손관리, 반송 및 환불관리

■ 기업체수요관리시스템(<http://s-tdms.seoul.go.kr/>) 자료 관리

- 시설물 현황, 참여 신청, 현장점검 결과, 경감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입력, 경감률 계산, 서울행정시스템 연계조치

VI 행정 사항

□ 관련부서 협조 요청

- 신축·증축·멸실·용도변경·가설건축물 및 시설물 소유권 변동 현황 [건축과]
- 일반숙박시설 및 관광숙박시설 현황 [관광진흥과]
- 주거용 감면 시설물 주민등록현황(전입신고 현황) [자치행정과, 전산정보과]
- 재외국민의 국내거소신고 현황 [출입국관리소]
- 우리부서 홈페이지 및 구보·전광판 게시 [교통정책과, 공보실]
- 부담금 감면 신청 관련 서식 제작 [교통정책과]

□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결정 및 고지서 발송 : 2015. 9월~10월

- 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운영 및 경감률 결정 : 2015. 9월 말
 - 교통량 감축 이행자 부담금 경감신청 : 2015. 8. 10 限
 - 부담금 경감률 결정통지 : 경감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
- 분할납부 신청접수 : 납기개시 후 5일 이내

□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징수 : 2015. 10.16 ~ 10.31

□ 2015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실적 제출 [서울시] : 2015. 11. 13